외국인거주법

제1조 이 법은 「1973년 외국인거주법」이라 하며, 관보게재일로부터 1개월 후 시행한다.

제2조 이 법의 각 용어는 다음의 의미를 갖는다.

부처: 내무부

장관: 내무부장관

국: 공공안보국

책임자: 공공안보 및 외국인거주국책임자

국경직원: 국경에서 외국인등록과 여권에 대한 비자발급업무를 수행하는 자

제3조 공공안보국 내 외국인거주부서를 설립한다.

제1절 외국인입국

제4조 본국의 정부기관이 발급한 효력 있는 여권 또는 여행증명서를 소지하고, 비자를 발급 받은 외국인은 요르단하심왕국에 입국 및 출국할 수 있다.

제5조 국경의 직원을 통하여 여권 및 여행증명서에 비자를 취득한 후 국경, 항구, 공항을 통한 입출국은 합법적인 입출국으로 본다.

제6조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지정된 국경이 아닌 다른 장소를 통하여 입국한 경우 외국인은 입국한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직접 가까운 공공안보국의 지부 또는 그 밖의 안보기관을 방문하여야 한다.

제7조 모든 선박, 항공기, 차량, 그 밖의 운송수단을 운전 및 조종한 자는 요르단도착 시 운송수단에 탑승한 승객을 내리도록 하여 관할당국직원의 절차를 밟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외국인은 요르단으로부터 영구적으로 출국하기 전에 공공안보국에 체류허가증과 그 밖의 허가증을 지정기간 내에 양도하여야 한다.

제9조 비자의 종류, 기간, 취득조건, 절차, 면제, 발급료는 지정규칙에 따라 정한다.

제10조 내무부장관은 외국인이 소지하는 여행증명서의 양식을 지정한다.

제2절 외국인등록

제11조 요르단에 2주 이상 체류하고자 하는 모든 외국인은 입국 후 2주 이내에 공공안보국이나 경찰서에 입국사실을 신고한다.

제12조 모든 외국인은 체류사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안보국이나 경찰서에 이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 공공안보 및 외국인거주국책임자는 합당한 사유가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전 두 조에 명시한 의무를 면제하여 줄 수 있다.

제14조 외국인이 체류하는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외국인숙박 시 명단과 주소를 안보국이나 경찰서에 발송하여야 한다.

제15조 모든 외국인은 요르단에 체류하는 동안 관할당국의 요청 시 여권 또는 여행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6조 모든 요르단국민 또는 회사 또는 기관은 요르단 내 체류허가를

취득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다.

제17조 외국인체류에 관한 모든 기관은 공공안보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에 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절 체류허가

제18조 요르단에 체류하고자 하는 모든 외국인은 이 법에 따라 체류허가를 취득하여야 한다.

제19조 내무부장관은 공공안보 및 외국인거주국책임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외국인체류허가신청의 수락 및 거부를 결정한다.

제20조 공공안보 및 외국인거주국책임자는 외국인에 대한 체류허가발급 및 연장에 관한 업무를 이행한다.

제21조 체류허가신청서는 이 법에 따라 지정한 모든 항목을 기재한 후 공공안보국에 제출한다.

제22조 체류허가기간은 1년이며, 연장이 가능하다.

제23조 체류허가발급료는 1년에 30디나르이며, 분실 시 재발급료는 10디나르이다.

제24조 내무부장관의 결정에 따라 허가증양식을 지정한다.

제25조 외국인의 만16세 이상의 자녀는 요르단에 체류하는 동안 체류허가를 취득하여야 한다.

제26조 요르단에 체류하여야 하는 합당한 사유가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체류를 허가한다.

제27조 내무부장관은 외국인에 대하여 허가한 체류기간경과 후 출국에 대한 보증금지급을 명할 수 있다.

제28조 공공안보 및 외국인거주국책임자는 이 법에 따라 매년 체류허가를 발급한다.

제4절 면제

제29조 이 법은 국가원수와 그 가족과 외교단 및 영사단과 비자를 취득한 선박, 항공기선장과 조종사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0조 정부병원에 간호사로 근무하는 외국인, 요르단학교, 대학, 교육기관의 초청으로 입국한 학생, 요르단정부를 통하여 입국한 기술전문가, 정부가 지정한 아랍국가의 국민에 대하여는 체류허가발급료를 면제한다.

제5절 처벌과 위반행위

제31조 이 법의 제4조와 제5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입국한 자는 영장 없이 체포한다.

제32조 외국인체류관할당국의 행정담당자는 외국인의 권리에 대한 법원의 결정공포 후 외국인의 추방 또는 체류여부를 결정한다.

제33조 선박, 항공기, 차량의 선장, 조종사, 운전자가 여권이나 여행증명서를 소지하지 아니한 승객을 항구, 공항, 국경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내리도록 한 경우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구금 또는 10디나르 이상 50디나르 이하의 벌금 또는 두 건의 벌칙에 처한다.

제34조 합법적으로 요르단에 입국한 후 지정기간 내 체류허가를 취득하지 아니한 외국인은 허가 미 취득 기간 중 매달 45디르함의 벌금에 처한다.

제35조 체류허가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한 모든 회사와 사용자에 대하여는 외국인1인당 50디나르 이상 75디나르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조 지정벌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이 법의 위반행위의 경우 행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는 1주일 이상 1개월 이하의 구금 또는 10디나르 이상의 벌금 또는 두 건의 벌칙에 처한다.

제37조 내무부장관은 위반행위를 저지른 외국인에 대한 추방을 명할 수 있다.

제38조 내무부장관은 이 법의 제27조에 명시한 보증금몰수를 명할 수 있다.

제39조 내무부장관은 이 법에 명시한 전체 또는 일부의 권한을 내무부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0조 각료회의는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규칙을 공포한다.

제41조 1927년 외국인에 관한 법은 폐지한다.

제42조 각 부처의 장관은 이 법을 이행하여야 한다.